

부산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가단3115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용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남재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순중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파산자 C와 피고 사이에 2020. 5.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9. 접수 제629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각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 번	보증일	금융기관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일자	대출금액
1	2017. 3. 28.	E은행	76,500,000	2021. 3. 26.	2017. 3. 30.	90,000,000
2	2019. 7. 25.	기업은행	72,250,000	2021. 7. 23.	2019. 7. 26.	85,000,000

나. A은 위 표의 각 보증일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20. 10. 22.경 각 금융기관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위와 같은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다음과 같이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구상금 합계
1	E은행	2021. 1. 29.	68,850,000	811,702	69,661,702
2	기업은행	2021. 1. 29.	72,250,000	1,137,376	73,387,376
			141,100,000	1,949,078	143,049,078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연 8%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고, 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내지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 572,255원도 소외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마.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A은 채무초과상태(적극재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액 2억 2,800만원, 소극재산 합계: 464,805,078원)에서 2020. 5. 13.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19. 접수 제629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사. A은 부산지방법원 2021하단100746, 2021하면10074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1.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은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 각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A에게 사업자금 1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성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사하구 ,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부산 사하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호 84.995㎡

대지권의 표시

토지권의 표시: 1. 부산 사하구 대 7963㎡

 2. 부산 사하구 대 2414㎡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0377000분의 61314

-- 이 상 --

